

(25) 가정폭력 피해자를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정책요구

- 피해자의 자녀가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관행을 개선하고 폭력가정의 자녀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등 의료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확대
- 폭력 가정의 자녀를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
- 여성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취업알선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 있는 자와 피해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가정폭력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자가 의료보호와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쉼터) 설치·시범 운영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의료·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일반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는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되며,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에게만 의료보호를 위한 소정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 피해자가 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이나 친지의 집으로 피신을 할 경우 취학연령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해자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도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전학을 받아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학교에서 보호자(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녀의 친권자로서 학교에 자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26)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체계화,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정책요구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1391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을 기능에 따라 체계화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해야 하고, 상담소와 보호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충하여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은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연계 하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애초에 의도했던 바와 달리 연계 기능이 취약하여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366을 상담소와 보호시설, 병원, 경찰 등과 연계하는 긴급 연계전화로 그 기능을 설정하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7) 폭력 예방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 및 국민대상 교육 강화

▶ 정책요구

- 성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구 필요
-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일반인의 의식변화를 위해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부에서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대상별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규과목이 아니라 가정 교육에서 일부분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양성평등한 성교육이 아니라 순결교육으로 진행되는 곳조차 있다.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등에서 성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교육의 이념과 철학, 기준, 내용이 상호 유통되지 않고 있다.
- 2001년도 서울시지방공무원 평등의식과정 및 법무 연수원에 여성범죄관련수사실무반 등 1주 과정의 독립된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경찰관 직무교육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수사시 여성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이 체계화되고 있다. 최근 성매매 범죄 관련한 직무교육도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피해자가 2종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한 범죄 수사시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 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에 따라 세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IV. 여성의 가족보호 노동의 사회화 및 아동과 노인의 인권보호

(28) 차등 보육료제 도입,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50%까지 확대

▶ 정책요구

-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제를 도입하여 부모의 보육 비용 완화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50%까지 확대
- 5세아 무상보육을 조기에 도입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 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또는 보수 교육시 대체인력 확충, 교사인건비 지원을 통한 교사처우 개선
-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5~29세 기혼 여성 의 71%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일반 보육시설은 증가했으나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 2001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시설(1,295개, 보육시설 중 6.7%)과 법인보육시설(2,538개소, 13.2%)을 합쳐도 20% 미만이고(이용아동기준으로 약 38%) 나머지는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 전반적인 공공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 정부의 보육사업 관련 예산은 총 보육비용의 28%에 불과하여 미국 41%, 일본의 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보육교사중 국·공립 시설 종사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9.2시간, 개인시설이 59.6시간, 직장 보육시설이 59.6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수준은 국·공립은 평균 99만 3천원, 개인시설은 66만3천원, 직장 보육시설은 92만5천원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의 경우도 국·공립 시설은 72%, 개인시설은 12.4%, 직장 보육시설은 7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9) 방과후보육 및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 정책요구

- 기초 자치단체별로 국공립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최소 2개 이상 확충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국공립 방과후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영아보육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보육 수요 총 족율이 13.1%에 불과해 아직도 출산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200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 및 기능 재정립방안'에 따르면, 전국 1290개 국공립보육시설 가운데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곳은 9.4%에 불과했으며, 방과후보육 아동수는 5명 이하 22.1%, 6~10명 26.5%, 11~15명 22.1% 등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 별도 교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였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의 65.9%가 취업모인 점을 감안할 때 특수 보육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30)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및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정책요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층을 도시가구소득 평균 80% 미만 가구까지 무료 또는 실비로 확대하고, 치매예방 및 치료병원을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일반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모든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15.1%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0년 65세 노인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은 62명이고 85세 이상에서는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은 30명에 불과하다. 노인문제는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노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성노인의 평균 수명은 79.5세이고 남성은 72.1세이다.)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정책요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와 병노인에 대한 가족간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노령화의 빠른 진행과 저출산의 동시적인 진행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초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고령노인에 대한 일상적인 수발과 질병이 있는 노인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 있고 특히 여성에게 책임이 떠넘겨져 있다.

V. 저혜택 여성의 복지 및 인권증진

(32) 여성 농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농촌형 산후조리센터 설립

▶ 정책요구

- 면 단위 보건소 내에 공중한의사 배치, 여성농민의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순회서비스와 정기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 출산후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농촌형 산후조리 센터 설립·운영

▶ 현황 및 필요성

농업노동형태의 변화와 시설재배의 증가로 대부분의 여성 농민이 몇 가지의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으나 농림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농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농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는 진료 가능한 질병이 제한되어 있어 일상적 건강관리가 어렵다.

(33)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설치 및 위원의 50% 여성농민참여 보장

▶ 정책요구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설치하고, 여성농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의 50%를 여성농민과 여성농민단체에게 할당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농민정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정부의 농정심의회 등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이 저조하다. 전북의 시·군 조사 결과 농업관련 위원회의 여성농민 참여율은 3%~15.8%에 불과하다.

(34) 관련부처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국회의원 및 고위 정책 결정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 정책요구

- 여성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집행자들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의무화
- 국회의원, 시·도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중 10%, 모든 공직에 5%를 여성장애인에게 할당

▶ 현황 및 필요성

- 세계보건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고, 그 중의 절반이 여성장애인이다. 따라서 공직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할 때 그 중의 10%를 여성장애인에게 할당하는 것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당연한 요구이다.

(35)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정책요구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수당 지급, 임신·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책(교통편 지원, 통원도우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제도화, 정기검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 마련
- 여성장애인과 의료진을 위한 임신, 피임, 출산, 부부간의 성관계,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기능 확대, 방문간호제도, 일정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여성장애인 환자 관리 담당 부서를 의무적으로 운영,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한 정기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수당 지급, 보육시설 등에 여성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 제도화 및 학습도우미 파견 제도화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의 모성권 논의는 비장애 여성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도우미제도가 전부이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44.7%가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교육 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교육비 등 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 병원 데려가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36)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 고용 확대방안 마련

▶ 정책요구

- 장애인 교육현황에 대한 성별통계 구축, 장애여아 조기교육 의무화,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및 여성장애인 우선 입학 특례제 실시, 여성장애인 검정고시반 운영, 의식화·문화·정보·리더쉽 교육 등 여성장애인 사회 교육 지원
- 장애인 취업관련 성별통계 구축 및 직업훈련 체계화
- 여성 장애인들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교육배경, 직업적성 등에 따라 직종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자격증 훈련과 단순기능 훈련 가능자를 구분해서 직업훈련 실시
- 여성 장애인이 직업훈련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타 설치·운영,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용자비에 대한 여성장애인 할당 명문화
- 장애인 의무 고용율의 50%를 여성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명문화,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선정, 여성장애인 우선 고용 제도화
- 취업 여성 장애인에 대한 특별고용수당제(가칭) 도입

▶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7%이다.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은 4.2%로 고학력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 같은 수치는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요인에 의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직업훈련 및 직종과 훈련기관 또한 남성 중심으로 되어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신원보증문제, 안정된 취업처가 없어 일시적인 취업에 그치는 실정이다.

(37)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강력처벌 및 성매매된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방안 강화

▶ 정책요구

- 국제적인 성매매 알선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국제적인 성매매를 조장하는 E-6(공연홍행비자)비자 개선 및 외국여성을 초청하는 공연기획사 관리·감독 강화
-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 설치
- 외국인 여성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하지말고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 내국인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 현황 및 필요성

- 1996년 미군기지촌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 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E-6비자(예술홍행비자)를 허가하였다. 이 비자는 관광호텔 등 유홍업소에서 공연 또는 예술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데 수 천 명의 필리핀 여성과 구소련계 여성들이 무희로 취업하는 줄 알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성매매 업소에 넘겨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새움터가

2001년 경기도 지역 기지촌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이 1,183명이 확인되었고 이 숫자는 조사원에 의해 확인된 최소치이고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기지촌으로 흘러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원하지 않지만 업소 주인에게 여권도 빼앗기고 티켓을 할당받은 만큼 끊지 못하면 월급을 착취당하고 심한 경우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체쇼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며 구타, 강간 등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업소를 탈출할 방법을 모르고, 신고할 경우 무조건 추방되면서 범죄조직에 노출되어 더 큰 빚을 지게 되므로 한국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38)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 및 인권보호방안 마련

▶ 정책요구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양성화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저임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7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근로자 258,866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이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 연수생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연수생의 기본급이 200~260달러에 불과해 불법 체류자 임금의 절반 내지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연수생을 대량 도입한 첫 해인 1994년에는 산업기술연수생의 73.0%가 사업체를 이탈하였다.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연수업체들은 일과 후 또는 휴일 외출을 통제하고 한국인 감시자를 붙여두거나 심지어 숙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2002년 7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2002년 5월까지 자진 신고한 26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2003년 3월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대신 산업기술연수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기존 연수제도의 개선 없이 이루어져 그동안 발생한 연수제도의 폐해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 일뿐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VI.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 정책 수립

(39)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 정책요구

-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기초출산수당제를 도입, 그 비용을 사회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
- 출산한 전 여성에게 출산격려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분만 수당 지급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현재 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는 1.3명으로 1970년 4.5명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출산을 사회적 의미로 받아들여 모성보호와 출산비용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01년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가내노동자까지 확대하

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영세 도시자영업자, 여성농어민까지 출산 후 휴가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

▶ 법 개정 요구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40) 출산의 질적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 정책요구

세계 최고수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임산부 중심의 분만시설 확보, 모자동신 운영의 확대, 분만법의 선택 권한 보장, 산전후 교육 및 상담기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2001년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39.6%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이러한 제왕절개분만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제왕절개율이 높다고 알려진 미국(23%, 2000년)보다도 약 1.7배가 높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0%보다 3~4배 높은 것이다.

(41)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정책 수립

▶ 정책요구

-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여성건강통계 구축
- 여아낙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의료인 처벌, 10대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교육 확대 및 그룹홈 형태의 미혼모 지원 서비스 확충
- 골다공증, 호르몬치료 등 중년 여성이 겪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증가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책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다. 하지만 전체수명 중에서 질병, 장애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10.3%, 여성이 16.3%로 삶의 질을 고려한 건강수명은 별로 길지 않다. 중·장년기(45~64세)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정신·행동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중·장년기 여성의 40%(남성은 16%)가 '의사진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여성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한편 25세 이후 여

성의 건강 검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임신소모율이 39%(기혼여성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85년 6.0%였던 제왕절개 분만이 1999년에는 43%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38.6%, 2001년에는 39.6% 수준으로 나타났다. WHO가 권고하는 10~15%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 여성의 생식기 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자궁근종, 자궁경부암 등 자궁관련 질환으로 자궁을 제거한 여성의 한 해 7만 명으로 추정되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0년 국가 암 등록 사업 결과'에서도 여성들의 유방암이 지난 84년에 비해 62.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VII. 각 분야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 성주류화

(42) 여성부내 성인지적 정책분석 및 모니터 전담 부서 설치,
각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실태 보고서 의무화

▶ 정책요구

- 성인지적 정책 분석기법 마련 및 정부와 공공기관의 여성 정책 실행 모니터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여성부 내에 설치하여 각 부처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분석이 통합되도록 함
- 모든 부처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여성부장관에게 매년 성평등 정책 이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황 및 필요성

- 모든 정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입, 실행, 평가 단계마다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 여부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이미 호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성별 효과를 분석하는 젠더분석을 실시하

고 있으며 '여성정책 모니터 실무단' 등과 같은 젠더분석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43)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 정책요구

우선적으로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환경부 내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여성부가 주관하는 여성정책담당관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1998년부터 6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실행정도에 대한 여성부의 평가에 따르면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부서의 경우는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여성정책담당관이 부재한 부서들은 여성정책과제가 다수 부여된 정책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여성정책과제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의 운영 평가 결과 여성정책담당관의 낮은 직급(4급), 적은 인원, 많은 업무 등이 효율적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44) 여성부 권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정책요구

-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선조직 확보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등 여성부의 계선조직 구축, 여성정책 관련 예산안권·감사권 등을 여성부에 귀속시켜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여성정책 연계 및 집행력 강화

- 차별개선위원회 조직 및 권한 확대

차별개선위원회를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산하까지 확대, 시정명령권 부여, 상임위원을 두어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 담보

- 여성부 인력 및 예산 확대

여성부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 하되,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예산, 가족정책 수립 예산,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 예산, 남녀차별신고센타 및 위원회 확대운영 예산, 여성사회교육 지원 예산, 여성부 조직 확대(성인지적 분석 담당 부서) 및 기존 부서 인원 충원 예산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관련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차별 신고내용을 심사할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 위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0명뿐이며 권한도 시정권고에 그쳐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 2002년 일반회계 중 여성관련예산은 2976 억 원으로 0.28%에 불과하며 여성부 예산은 361억(여성발전기금 100억 포함)불과하여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45) 성인지적 예산 정책 수립

▶ 정책요구

성인지적 예산(gender budget)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각 분야의 예산 책정, 집행 및 평가시 각 예산이 여성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예산이 남녀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관점에 따라 성인지적 예산분석(젠더예산, gender budget)과 정책에 대한 젠더분석(gender analysis)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젠더 예산분석은 2000년 현재 전세계 약 20여 개국이 수행되고 있으며, OECD, UNIFEM, UNDP 등 국제 기구들도 2015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성인지적 예산조치를 하도록 할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국가는 정부정책에 대한 성별 효과를 분석하는 젠더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성주류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예산과 정책을

평가하고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이 부재하여 성평등정책이 여성부 정책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각 부처의 사업원칙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6) 공무원 대상의 성평등 교육 강화 의무화

▶ 정책요구

중앙 정부 및 지자체내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2001년 16개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성차별적인 관행과 태도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의식을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VIII. 양성평등 의식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교육 · 미디어 · 문화 정책 수립

(47) 일상생활의 성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정책요구

제사, 명절, 회식 등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남녀공동참여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학교교육과 공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제사, 명절에는 가족내 성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음식준비는 여성에게 전담되고 남성들은 여가를 즐긴다.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여성들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명절증후군을 겪는다.
- 직장 회식에서 여성들은 상사의 술시중을 강요받거나 남성 중심의 놀이문화에 분위기를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출가외인', '남아선호', '여자가 나선다' 등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사회통념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8) 방송위원회 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성평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 강화

▶ 정책요구

양성평등이 명시된 통합 방송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심의규정 정비와 심의강화를 위해 방송위원회내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성 평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프로그램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를 일부 개발하였으나 아직 심의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성차별적 내용을 심의 · 규제하기 이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화와 실행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내에 성차별업무를 전담하는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49) 미디어 산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 정책요구

남성 중심의 미디어산업 인력구조의 개선을 위해 여성고용 할당제를 도입하고, 동일조건 시 여성우선 승진제를 도입 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방송 3사와 지방국, 계열사, 특수방송을 포함해 정규직 13,300명 중 여성은 1,192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1,599명 중 여성이 536명으로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일 38.8%, 인도 12.2%, 말레이시아 27.7%에 비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2000년 여성연합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실·국장 이상의 관리직급에 여성이 1.2%, 1직급에 3.1%, 2직급에 6.5%(차장 이상), 3직급에 5.2%, 4직급에 6.8%, 5직급에 16%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방송은부장급 이상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결정직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고, 부장대우 2명(1.8%), 차장이 15명으로 6.3%, 차장대우도 31명으로 9.2%만을 차지하고 있다.

(50) 성차별 프로그램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

▶ 정책요구

미디어상의 여성인권 침해 및 성 상품화 예방을 위해 성차별 프로그램에 대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종합유선방송 심의기준에 성폭력의 표현,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개인의 명예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여성에 대한 각종 언어적·물리적 폭력과 비하,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상품화를 시정하는데는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프로그램으로 세 번 지목되었을 경우 방영을 금지해 성차별 프로그램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51) 양성평등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 정책요구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초·중·고등학교 정규과목에 양성평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각 교과 교과서의 내용을 양성평등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에 육박하지만,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여성은 10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다. 고등학교역사나 세계사는 현대 사회를 다루면서 노동운동, 환경보전운동, 사회보장정책 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성정책이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 현재, 환경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나 성평등 교육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성평등의식을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성의식의 개방화, 여성 경제참가율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가족 및 사회에서 양성이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식·생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52) 교사대상의 성평등 교육 강화

▶ 정책요구

교사 대상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교육 시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수업 지도시 양성평등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교육 지침을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학생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할이나, 교사의 성평등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교사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성평등 교육이 구체화되기 힘들다.

(53) 각종 국가 고시에 양성평등 관련 과목 채택,
법 집행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정책요구

- 행정·사법 고시, 공무원 채용 시험 과목 및 행정·사법
연수원 및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양성평등 관련 과목
채택
- 여성관련 법을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 경찰, 검찰, 판사 등
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통 필수과목은 5급은 헌법, 영
어, 한국사이며 7급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9급은 국어, 영어, 국사이다.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 중 하
나가 양성평등 정책이고, 정부 정책 집행과정에서 공무원
의 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자질을 심
사하는 채용 및 승진시험시 양성평등 의식관련 과목을 포
함시켜야 한다.
- 현재, 사법 연수원의 교육 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관련 과
목 교육이 없어, 법관 및 변호사들이 법 현장에서 성차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식 및 법 실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녀 차별적인 의
식을 가진 판사에 의해 여성 차별적인 판례가 계속 생산
되고 있고, 변호사들 또한 남녀 차별문제에 대응할 수 있
는 법 실무능력이 약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VIII.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

(5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실효성 있는 여성 할당제 실시

▶ 정책요구

-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 비율을 1:1로 조정
-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 30%이상, 비례대표 50%_이상 여성할당, 시·도의회 의원 선거시, 지역구 30%이상, 비례대표 50%이상 여성할당. 단, 비례대표 추천시 여성을 2명당 1명씩 반영.
-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2개 동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하는 1인 2표제 방식 채택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 중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인 1표에 의한 전국구 의석배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비

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을 위해 1인 2투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2002년 6월 광역의회 선거에서 도입했고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도입하되 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현행 정당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30%, 비례대표 광역의원 중 50%, 지역구 광역의원 중 30% 여성할당이 명시되어 있다.
- 16대 여성국회의원은 273명 중 16명(5.9%)으로, 이 중 4명이 지역구의원이고 12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는 227명의 지역구의원 중 1.8%, 46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 26.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는 국제의회연맹(IPU) 조사결과, 전세계 179개국 중 96위에 해당하며, 전세계 의회 평균 14.3%에 크게 미달된다.
- 현재 여성지방의원은 광역의원이 9.2%, 기초의회 의원이 2.2%이다. 광역의회 지역구의원이 14명(2.3%)이고 비례대표의원이 49명(67.1%)이다.

(55)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시 여성 30% 이상 할당

▶ 정책요구

장·차관 및 고위직 공무원 임명시 여성을 30% 이상 임명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 단체장 임명시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12월 현재, 정부 18부 중 여성장관이 2명, 여성차관이 1명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장관의 31%가 여성이고 영국은 23%, 독일은 10.7%, 페란드, 스웨덴은 30%이상이 여성 장관이다. 또한 안도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도 여성장관 비율이 20~29%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정도에 비추어봤을 때, 여성의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현격히 낮으며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매우 소외되어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56)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 도입

▶ 정책요구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30% 할당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승진 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2002년 3월 현재, 정부 전체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4.8%에 불과하다(중앙인사위, 행자부 보도자료, 2002. 3. 27). 2001년 중앙인사위원회가 국내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의 자료 등을 통해 각국 여성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말 기준으로 5급 이상 행정직 및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4.7%로, 전세계 76개국 중 방글라데시(4.9%)에 이어 7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바람이 불고 있는 이슬람국가와 비교했을 때 파키스탄(8.0%), 바레인(7.3%)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이슬람국가인 요르단(4.6%)과 비슷한 수준이다.

(57) 정부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 50% 할당

▶ 정책요구

모든 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을 50% 할당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12월 말 현재 37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의 법률·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당연직 제외)의 비율은 평균 27.7%이다.(여성백서, 2002)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정부의 여성위원 확대 정책에 의해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의견을 각 위원회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서 할당 목표치를 50%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X.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위한 여성참여 확대

(58) 평화·통일분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및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지원 강화

▶ 정책요구

-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일정책실현을 위해 평화·통일 관련분야(국방, 외교, 통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50% 이상 확대
- 다양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 서로의 여성 상황과 여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마련해나 가도록 행정·예산 지원 적극화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은 통일관련 주요정책과 통일을 위한 참여과정에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통일, 군사,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통일정책자문회의 정도를 제외하면 여전히 여성계가 요구하는 30% 할당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

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그간 여성이 소외되어왔던 국방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 1991년~93년 사이에 동경, 서울과 평양에서 5회에 걸쳐 이루어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차원에서 남북여성교류의 물꼬를 튼 것 이었다. 그리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남북공동기소 합의, 2001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여성교류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59) 반전·평화정책 수립과 남북상호군축 실시

▶ 정책요구

평화정책을 위해 정부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 지원요청을 거부하고 남북상호 군축을 실시하고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틸네전후 전세계적으로 군사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은 국민의 정부의 햅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증가시켜 2002년도 국방예산은 2001년도 대비 6.3%나 증가된 16조 3,640억원에 이르고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서 관계개선이 되어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통념이었다. 하지만 남북한 긴장의 핵심은 결국 군사적 대치상태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없이 진정한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으며,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안되면 타 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최소한 군사분야와 다른 분야의 관계개선이 병행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국방비를 감액하고 군축을 이행하여 남북한 평화, 상호 협력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0) 환경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도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정책요구

- 환경관련 의사결정적 공무원, 정부위원회에 여성 50% 할당 제도화
- 정부, 전문가, NGO로 구성된 여성환경포럼을 설치하여 환경과 여성정책의 통합을 위한 연구 활성화 유도
- 환경분야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키기 위해 환경정책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 성인지 데이터 구축, 지방의제 21 및 이행과정에 성 관점 통합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은 양육자, 소비자, 교육자, 정책 결정자, 생산자로서 지역에서의 환경보호와 녹색소비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환경정책 입안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미비하여 여성의 요구가 환경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의제 21' 지침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혹은 '녹색소비'를 새로운 세

기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5월에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11개 단체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시민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